2026년 제2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2026년 제2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1 임용예정인원 (3개 직급, 총 3명)

임용예정직급	채용직류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환경주사보	일반환경	1명	정년적용	공동실험실습관 또는 총무과
공업서기보	전기	1명	정년적용	시설과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1명	정년적용	실습선 또는 해기교육지원행정부서

2 임용예정직무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환경주사보	○연구실 안전관리(안전교육, 안전점검, 사고예방 및 보고 등 기타 안전관리 업무) ○환경관리(수질 및 대기 관련 업무) ○학교 재난 안전관리 업무
공업서기보	○전기·통신·소방 시설사업 설계, 감독,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용역 유지관리(소방 및 승강기), 전기감리 업무, 에너지소비량 정보관리 업무 등
해양수산서기보	○실습선 승무원 및 해기교육지원 행정업무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7.1.) 기준]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환경주사보(일반환경)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기술사 소지자** 또는 **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환경 관리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기술사 : 대기관리, 수질관리 - 기사(3년) : 대기환경, 수질환경 - 산업기사(6년) : 대기환경, 수질환경
공업서기보(전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전기 관리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 기능사(2년) : 전기
해양수산서기보(선박항해)	○**3급 항해사(상선)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6.6.12.) 기준]

임용예정직급	우대요건
환경주사보 (일반환경)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연구실안전관리사, 기사(가스,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산업안전), 산업기사(산업안전)** - 등급별 차등배점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학위: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

임용예정직급	우대요건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①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②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③ **산업기사 외**(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1급), ④ **기능사 외**(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3급 폐지 → 단일등급(구1급) 유지)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1급(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하되, 복수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 등급구분: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외 > 기능사 외
공업서기보 (전기)	○ **상위 자격증 소지자 : <u>기사 이상</u> 자격증 소지자** - 등급별 차등배점 ○ **관련분야 경력** ※ **최대 6년(72개월)까지 인정**, 분기별 차등 배점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전기관리 관련분야 경력**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①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②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③ **산업기사 외**(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1급), ④ **기능사 외**(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3급 폐지 → 단일등급(구1급) 유지)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1급(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하되, 복수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 등급구분: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외 > 기능사 외
해양수산 서기보 (선박항해)	○ **상위 자격증 소지자 : <u>2급 항해사(상선) 이상</u> 자격증 소지자** - 등급별 차등배점 ○ **관련분야 경력** ※ **최대 6년(72개월)까지 인정**, 분기별 차등 배점 **- <u>3급 항해사(상선) 자격증 취득 이후 총톤수 6,000톤 이상 상선</u> 승선경력** ○ **3등 항해사 이상의 승선공인을 위한 필수교육* 모두 이수한 자** * **필수교육**: ①상급안전교육, ②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 ③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④전자해도장치교육, ⑤자동충돌예방교육 ※상급안전교육: 선원법 시행규칙[별표 5의5]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전자해도장치교육, 자동충돌예방교육: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표1] ○ **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 - **<u>'23. 6. 13. 이후</u>** 실시된 어학시험 중 **<u>원서접수 마감일('26. 6. 12.)</u>**까지 발표된 성적으로 **<u>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어학성적 사전 등록"에 등록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u>** ※ 다만,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 중 서류전형일('26. 6. 22.) 기준 2년 이내 또는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성적만 인정(증명서 제출 필요)

임용예정직급	우대요건

※ 어학성적 진위 여부는 '행정안전부 e하나로민원 서비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확인·검증 예정이나, 어학성적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개별검증 시험*)에는 지원자에게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지원자가 어학성적을 등록했으나 해당 검정기관을 통해 어학성적의 유효성 확인이 안 된 경우)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 인정
- 시험종류별・등급별 차등 배점(중복보유 시 유리한 1개 점수만 인정)

[어학성적등급표]

등급	TOEFL		TOEIC	TEPS	G-TELP LEVEL 2	FLEX
	PBT	IBT				
A	567점 이상	86점 이상	790점 이상	385점 이상	77점 이상	700점 이상
B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65점 이상	625점 이상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①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②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③ **산업기사 외**(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1급),
④ **기능사 외**(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3급 폐지 → 단일등급(구1급) 유지)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1급(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하되, 복수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 등급구분: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외 > 기능사 외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유 의 사 항

1. <u>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우대요건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u>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판단기준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시간(주40시간 등),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명시, 발급기관 직인 확인
-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주20시간 등)을 명기하여 제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은 경력(재직) 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필수 제출

3.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4.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5 시험 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평가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합격자 결정 방법: 4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하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동일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평정순위 결정)**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 상의 개수가 같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6. 2.(화)~ '26. 6. 12.(금)	'26. 6. 9.(화)~ '26. 6. 12.(금)	'26. 6. 24.(수) 예정	'26. 7. 1.(수) 예정	'26. 7. 16.(목)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6. 9.(화) ~ 6. 12.(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 주소]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우편 접수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을 통해 공고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 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자격증(응시자격) 사본 1부	
	승무경력증명서, 해기면허사항 각 1부	해양수산서기보 지원자 해당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응시요건 확인, 각 전형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활용
	주민등록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우대요건) 사본 1부	
	산업안전 관련 학위증 사본 1부	환경주사보 지원자 해당
	필수교육 이수증 사본 각 1부	해양수산서기보 지원자 해당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1부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또는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출/** 해양수산서기보 지원자 해당
	채용서류반환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026. **7월 말~8월 초** 예정,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9 안내 및 참고사항

- 우대요건 중 "어학성적"의 경우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어학성적 사전 등록)에 유효하게 등록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시스템에 성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어학성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051-410-403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환경A	일반환경	환경주사보	1명	공동실험실습관 또는 총무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주요 업무	○ 연구실 안전관리(안전교육, 안전점검, 사고예방 및 보고 등 기타 안전관리 업무) ○ 환경관리(수질 및 대기 관련 업무) ○ 학교 재난 안전관리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 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사고력, 문제해결력
필요 지식	○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대응 ○ 수질 및 대기 관리 관련 지식 ○ 학교 재난 안전관리 대응법
응시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기술사 소지자** 또는 **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환경 관리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기술사 : 대기관리, 수질관리 - 기사(3년) : 대기환경, 수질환경 - 산업기사(6년) : 대기환경, 수질환경
우대요건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연구실안전관리사, 기사(가스,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산업안전), 산업기사(산업안전)** - 등급별 차등배점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학위: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①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②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③ **산업기사 외**(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1급), ④ **기능사 외**(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3급 폐지 → 단일등급(구1급) 유지)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1급(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하되, 복수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 등급구분: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외 > 기능사 외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전기A	전기	공업서기보	1명	시설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주요 업무	○ 전기·통신·소방 시설사업 설계, 감독, 검사 등에 관한 업무 ○ 용역 유지관리(소방 및 승강기), 전기감리 업무, 에너지소비량 정보관리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 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 지식	○ 전기안전 및 전기응용 관련 지식 ○ 전기·통신·소방 시설사업 관련 지식 ○ 전기감리 및 에너지소비량 정보관리 지식
응시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전기 관리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 기능사(2년) : 전기
우대요건	○ **상위 자격증 소지자 : <u>기사 이상</u> 자격증 소지자** - 등급별 차등배점 ○ **관련분야 경력** ※ **최대 6년(72개월)까지 인정**, 분기별 차등 배점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전기관리 관련분야 경력**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①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②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③ **산업기사 외**(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1급), ④ **기능사 외**(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3급 폐지 → 단일등급(구1급) 유지)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1급(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하되, 복수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 등급구분: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외 > 기능사 외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해양수산A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해양수산서기보	1명	실습선 또는 해기교육지원 행정부서
주요 업무	○ 실습선 항해 및 정박당직 업무 ○ 승선실습교육 지원 업무 ○ 항해기기 및 선박무선국 운용관리 업무 ○ 실습선 출입항 수속 및 일반서무 관련 업무 등 ○ 해기교육 지원 업무 및 행정업무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 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항해통신장비관리 능력, 문제해결력			
필요 지식	○ 항해 및 통신장비에 관한 지식 ○ SOLAS, STCW, MARPOL 등 국제협약 ○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법 ○ 해사실무영어의 이해 ○ 전파법규 및 선박통신 관련 지식			
응시자격요건	○ **3급 항해사(상선)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상위자격증 소지자** : **2급 항해사(상선)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등급별 차등배점 ○ **관련분야 경력** - **3급 항해사(상선) 자격증 취득 이후 총톤수 6,000톤 이상 상선 승선경력** ※ **최대 6년(72개월)까지 인정**, 분기별 차등 배점 ○ **3등 항해사 이상의 승선공인을 위한 필수교육* 모두 이수한 자** * **필수교육**: ①상급안전교육, ②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 ③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④전자해도장치교육, ⑤자동충돌예방교육 ※ 상급안전교육: 선원법 시행규칙[별표 5의5] ※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전자해도장치교육, 자동충돌예방교육: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표1] ○ **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 - **'23. 6. 13. 이후** 실시된 어학시험 중 **원서접수 마감일('26. 6. 12.)**까지 발표된 성적으로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어학성적 사전 등록"에 등록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다만,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 중 서류전형일('26. 6. 22.) 기준 2년 이내 또는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성적만 인정(증명서 제출 필요) ※ 어학성적 진위 여부는 '행정안전부 e하나로민원 서비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확인·검증 예정이나, 어학성적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개별검증 시험*)에는 지원자에게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지원자가 어학성적을 등록했으나 해당 검정기관을 통해 어학성적의 유효성 확인이 안 된 경우)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 인정 - 시험종류별·등급별 차등 배점(중복보유 시 유리한 1개 점수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①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②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③ **산업기사 외**(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1급), ④ **기능사 외**(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3급 폐지 → 단일등급(구1급) 유지)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1급(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하되, 복수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 등급구분: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외 > 기능사 외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필수서류] **1. 응시원서(응시수수료 포함) 1부**	**o 별지서식 제1호 작성** **o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상당/9급: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필수서류] **2. 이력서 1부**	**o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필수서류] **3. 자기소개서 1부**	**o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A4 2매 이내로 작성
[필수서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o 별지서식 제4호 작성** - A4 2매 이내로 작성
[필수(응시요건)/해당자(우대요건)] 5. **자격증(응시**, 우대), 필수교육 이수증 및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또는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o (응시,우대/자격증) 응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o (우대/교육이수증) 3등 항해사 이상의 승선공인을 위한 필수교육[상급안전교육,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전자해도장치교육, 자동충돌예방장치 교육] 이수증 사본 o (우대/어학성적)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을 사전등록한 경우 **정부24**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발급**하여 **제출**.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명서 사본 제출
[필수(응시요건)/해당자(우대요건)] 6. 승무경력증명서 및 해기면허사항 1부	o 제출된 승무경력증명서로 관련 응시자격, 경력사항 등 검증 o 각 지방해양수산청,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o 해기사 자격은 해기사면허증으로 하되, 선박직원법 등에 따라 면허 재발급, 상위면허증 발급을 위해 하위면허증을 발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등에는 승무경력증명서 및 해기면허사항으로 확인함 o 해군 출신으로 상위자격증 발급 등으로 하위자격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각 해양수산청에서 최초 응시자격증 발급일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최초경력 확인 가능

구 분	내 용
[필수서류/해당자(우대요건)] 7. 최종학력증명서 및 산업안전 관련 학위증 사본 1부	ㅇ 환경주사보 응시자의 경우, 해당자에 한해 산업안전 관련 학위증 제출 ㅇ 각 전형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활용 < 제출예시 > 예1) 학사 졸업자는 학사 졸업증명서만 제출 예2) 학사 졸업 후 석사 과정 진행 중인 경우, 학사 졸업증명서와 석사 재학증명서 모두 제출 예3) 석사 졸업자는 학사, 석사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필수서류]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필수서류] **9.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필수서류] **10.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필수서류] **11. 주민등록초본**	ㅇ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하고 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ㅇ 개명 이력이 있는 경우 전/후 성명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ㅇ 과거주소변동 사항 불필요, 주민등록 뒷자리 표시
12. 채용서류반환 신청서 (별지서식 제8호)	ㅇ 희망자에 한함

<제출서류 표지용>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응시직급	제출자
	(서명)

▣ 작성목록(아래 순서대로 편철)

구분			제출여부 확인
1. 응시원서(응시수수료 포함)	필수	별지서식 제1호	□ 제출 □ 미제출
2. 이력서	필수	별지서식 제2호	□ 제출 □ 미제출
3. 자기소개서	필수	별지서식 제3호	□ 제출 □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별지서식 제4호	□ 제출 □ 미제출
5. 자격증(응시 및 우대) 사본	필수(응시) 해당자(우대)		□ 제출 □ 미제출
6. 필수교육 이수증(응시) 사본	해당자(우대)		□ 제출 □ 미제출
7.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또는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해당자(우대)		□ 제출 □ 미제출
8. 승무경력증명서 및 해기면허사항	필수(응시) 해당자(우대)		□ 제출 □ 미제출
9.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필수		□ 제출 □ 미제출
10. 산업안전 관련 학위증 사본	해당자(우대)		□ 제출 □ 미제출
11. 주민등록초본	필수		□ 제출 □ 미제출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별지서식 제5호	□ 제출 □ 미제출
1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필수	별지서식 제6호	□ 제출 □ 미제출
1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필수	별지서식 제7호	□ 제출 □ 미제출
15. 채용서류반환 신청서	해당자	별지서식 제8호	□ 제출 □ 미제출

*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v" 표시
* **제출서류(1~14번 해당서류만 제출) 외 다른 서류는 제출 금지**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기준(분량,건수 등)에 위배(과소 또는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료 편철은 클립, 집게를 이용하며 스테플러는 사용금지, 번호 순서대로 편철**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본인은 2026년 제2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본인기재 (예: 해양수산서기보(선박항해))		
응시자격		본인기재 (예: 3급 항해사(상선) 자격증 이상 소지자)		
※응시번호		성 명	(한글) 본인기재 (한자) 본인기재	
생년월일	본인기재	복수국적 해당여부	본인기재	
주 소	(우) 본인기재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A4용지 형태 (전자수입인지)로 발급 시 응시원서 뒷장에 첨부
전자우편	본인기재			
전 화 (휴대전화)	본인기재			

응 시 표 (2026년 제2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본인기재	
응시자격		본인기재	
※응시번호	미기재	성 명	(한글) 본인기재 (한자) 본인기재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 기재

(예) 환경주사보(일반환경) / 공업서기보(전기) / 해양수산서기보(선박항해)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미기재	응시 분야	(예: 해양수산)	응시 자격 요건	(예: 3급 항해사(상선) 자격증 소지자)	성명	

2. 응시자격 ※ 해당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문구 삭제 후 제출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경력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과장 (4급)	공고문에 명시된 직무관련 분야와 동일함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증			

3. 우대요건 ※ 해당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문구 삭제 후 제출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경력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과장 (4급)	공고문에 명시된 직무관련 분야와 동일함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증			

	전공분야	학위종류(박·석·학사)	학위취득일
학위	환경주사보 지원자 해당		

	교육명	교육 이수(수료)일	교육 이수증 발급 기관
필수교육			
	해양수산서기보 지원자 해당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영문성명
어학	해양수산서기보 지원자 해당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요건의 경력사항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 경력만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분야(일반환경, 해양수산, 전기)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분야의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응시분야(일반환경):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 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6년 이상 환경 관리 관련 분야** 기재
- 응시분야(전기):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전기 관리 관련 분야** 기재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작성**

- 응시분야(전기):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이후 전기관리 관련분야 경력**을 기재
- 응시분야(해양수산): **3급 항해사(상선) 자격증 취득 이후 총톤수 6천 톤 이상 상선 승선경력**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학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작성**

- 응시분야(일반환경)의 경우, 산업안전 관련 학위* 기재

* 관련 학위: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

필수교육 이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교육 이수 사항 기재**

- 응시분야(해양수산)의 경우, 필수교육 이수(수료) 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명·이수(수료) 예정일·이수증 발급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어학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공인영어시험 성적만 작성

- 응시분야(해양수산)의 경우, 우대요건에 제시된 어학성적등급표를 참고하여 유효기간 내 해당하는 공인영어 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 작성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어학성적 사전 등록"에 유효하게 등록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 중 서류전형일 ('26.4.3.) 기준 2년 이내 또는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하여 인정(증명서 제출 필요)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 인정
- 시험종류별·등급별 차등 배점(중복보유 시 유리한 1개 점수만 인정)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응시직급 및 분야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성 명	

◎ 자기소개서

아래 내용은 삭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작성요령(삭제 후 내용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글씨체 : 휴먼명조, 글씨크기 13pt, 줄간격 160%, 글자색 : 검정색)

※ 서식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되 성장과정, 지원동기, 가치관,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근무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근무할 때(X),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X), OO회사에서 근무할 때 (O)]

※ 성명, 서명 자필 작성

. . .

작 성 자: (서명)

<별지서식 제4호> (예시)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번호		응시직급 및 분야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성 명	

◎ 직무수행계획서

아래 내용은 삭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작성요령(삭제 후 내용작성)

(시험공고문에 명시된 담당 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1. ① 본인이 해당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② 해당 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

③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근무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근무할 때(X),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X), OO회사에서 근무할 때 (O)]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글씨체 : 휴먼명조, 글씨크기 13pt, 줄간격 160%, 글자색 : 검정색)

3. 성명, 서명은 자필 작성

. . .

작 성 자: (서명)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자 제출자료 발급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자필서명 (서명 또는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 부산영도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서식 제8호>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자필서명 (서명 또는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귀하

공지사항

1.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중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2.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